

제20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2015. 5. 7.(목) ~ 5. 13.(수)

附 議 案 件

총 8 건

-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光 明 市 議 會

- 차 례 -

I . 의회운영위원회 (6건)

-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 광명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 광명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 광명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
-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7

II . 자치행정위원회 (2건)

-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1
- 광명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7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4
----------	-----

발의연월일 : 2015년 4월 30일

발 의 자 : 조 회 선 의원(대표발의)

1. 구 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일부를 관외사람으로 위촉하는 조항은 제1항에 의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 사업자 및 거주지 제한 규정 삭제(안 제2조제2항)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의 정수) ① (생 략) ② <u>위원 중 광명시에 사업장 및 거주지</u> <u>주소외의 사람으로 1인 이상 2인 이하로</u> <u>구성하여야 한다.</u>	제2조(위원의 정수)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광명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광명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5
----------	-----

발의연월일 : 2015년 4월 30일

발 의 자 : 이 병 주 의원 (대표발의)

1. 구 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경우 법률고문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 일부를 보완하여
-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 및 의정보좌업무 행위와 관련한 쟁송사건 발생시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소송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중요 소송의 심의·지정과 소송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9조, 제10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9조와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중요 소송의 심의·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명시의회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소송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중요 소송으로 지정하고, 수임변호사와의 별도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다수의 주민생활과 공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2.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3. 광명시의회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소송
4. 의원 또는 의회 근무 공무원(이하 “의원 등“ 이라 한다.)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및 고소·고발 등 형사피소를 당한 경우 또는 공소제기된 소송사건으로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의정활동 보좌에 따른 행위이거나 의원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정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조 규정에 의한 변호활동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의원 등이 의회와 같이 피소되었을 경우 의회의 소송대리인과 동일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수임료는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의원 등 개인의 위법행위가 인정된 경우 해당 의원 등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심의위원회) ① 제9조에 따른 중요 소송의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광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 소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소 및 응소대책에 관한 사항
3.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수임변호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2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한 사항
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기록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 신 설 >	제9조(중요 소송의 심의·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명시의회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소송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중요 소송으로 지정하고, 수임변호사와의 별도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다수의 주민생활과 공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2.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3. 광명시의회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소송 4. 의원 또는 의회 근무 공무원(이하 “의원 등“ 이라 한다.)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및 고소·고발 등 형사피소를 당한 경우 또는 공소제기된 소송사건으로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의정활동 보좌에 따른 행위이거나 의원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정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 신 설 > <u>제9조</u> (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2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기록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조 규정에 의한 변호활동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의원 등이 의회와 같이 피소되었을 경우 의회의 소송대리인과 동일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수임료는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의원 등 개인의 위법행위가 인정된 경우 해당 의원 등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심의위원회) ① 제9조에 따른 중요 소송의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광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 소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소 및 응소대책에 관한 사항 3.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수임변호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u>제11조</u> (현행과 같음)
---	--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6
----------	-----

발의년월일 : 2015년 4월 30일

발 의 자 : 김정호 의원(대표발의)

1. 구 분 : 일부개정

2. 제안이유

- 2014년 11월 18일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시 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함.
(안 제4조 1항 ~ 2항)

4. 개정조례안 : 불 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임

7.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의원 대표발의 (외 인)
소 관	의회사무국
입 안	의원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감사·조사위원회) ① 제2조제1항의 감사위원회와 제3조제3항의 조사위원회 는 위원장1인과 <u>간사</u> 1인을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다.	제4조(감사·조사위원회) ① ----- ----- ----- <u>부위원장</u> ----- -----
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 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u>간사가</u> 위원장 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 ----- ----- ----- <u>부위원장이</u> ----- -----

**광명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7
----------	-----

발의연월일 : 2015년 4월 30일

발 의 자 : 김정호 의원(대표발의)

1. 구 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의회 또는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는 6급 및 7급 관계공무원”으로 하는 현행 조항은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어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의회 또는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는 6급 및 7급 관계공무원”을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으로 한다.(안 제2조 제5호)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의회 또는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는 6급 및 7급 관계공무원”을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u>의회 또는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는 6급 및 7급 관계공무원</u>	제2조(범위)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u>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u>

광명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광명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28
----------	-----

발의연월일 : 2015년 4월 30일

발 의 자 : 이윤정 의원 (대표발의)

1. 구 분 : 폐 지

2. 폐지이유

- 의정소식지 발행관련 조례내용이 “시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 수준에 버금가는 방대한 내용으로 현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는 업무추진에 무리가 따르며
- 또한 제8조(배부) 중 개인에 대한 우편 발송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광명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폐지

4. 폐지조례안 : 불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7. 기타참고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광명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의원 대표발의 (외 인)
소 관	의회사무국
입 안	의원

광명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정소식지”란 주요 의정 및 시책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지면을 말한다.
2. “의회 인터넷 홍보매체”란 의회 홈페이지, 의회 블로그, 의회 트위터, 의회 페이스북 북 등 정보통신망을 접속하여 이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매체를 말한다.
3. “시민 기자 등”이란 시민기자, 시민필진, 시민 리포터 등을 말한다.

제3조(홍보의 원칙) 의장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수행하며,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계획의 수립) ① 의장은 효율적인 의정홍보를 위하여 인쇄물, 신문, 방송, 영상,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한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홍보계획 수립시 성별, 연령 등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홍보의 방향, 시기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장 의정소식지

제5조(명칭) 의정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광명의정소식」이라 한다.

제6조(규격 및 발행주기) ① 소식지는 타블로이드판으로 하고, 연 6회 이상 12회 이하로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 ② 발행 부수는 광명시 인구 및 가구 수를 감안하여 적절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시 집행부의 발행부수에 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광명시의회 의장으로 한다.

제8조(배부) ① 소식지는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광명시

민 이외에 구독을 신청하는 개인이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식지 배부는 직접 배부와 우편 발송을 병행하고 전문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제9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인터넷 등을 통한 시민 제안의견 및 시민 기고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제작 및 편집) 의장은 의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기획, 취재, 촬영, 편집, 디자인, 인쇄 등 일부를 외부 전문업체를 이용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

제11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소식지의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1. 광명시의회 의원 2명 이내(원내교섭단체별 각 1명)
2. 신문 또는 잡지 편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광명시민 3명 이내
3. 광명시의회사무국 의회운영전문위원 및 홍보담당 직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 내지 유고로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결원되는 위원의 수만큼 추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촉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유고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질병 및 장기출타(거주지를 광명시 밖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을 건의 한 때
3. 제7조제3항제1호의 자로서 의원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원 신분을 상실한 때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홍보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작성
3. 기타 소식지나 광명시의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제17조(회의) ① 위원회는 격월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회소식지 발행을 하지 않는 달은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인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식지에 수록할 내용을 작성한 민간인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영상 및 인터넷 홍보 매체

제19조(종류) 영상 및 인터넷 홍보 매체는 광명시의회 인터넷 방송, 광명시의회 홈페이지, 광명시의회 공식 블로그, 광명시의회 공식 페이스북, 광명시의회 공식 트위터 등으로 한다.

제20조(제작인 등) 영상미디어·온라인 미디어의 제작인 및 발행인은 광명시의회의 장으로 한다.

제21조(방송 및 발행주기) 영상 미디어 및 온라인 미디어의 콘텐츠는 수시로 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한다.

제22조(사업내용) 의정활동 및 시민의 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광명시의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다.

제23조(운영) 의장은 영상 및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전문 업체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전문가 등을 채용할 수 있다.

제4장 시민기자 등 운영 지원

제24조(시민 기자 등 위촉) ① 의장은 의정 및 시책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시민 기자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 기자 등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관심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시민 기자 등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민 기자 등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 및 민원 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기자로서의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시민 기자 등 교육 지원) ① 의장은 시민 기자 및 편집위원 등의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재요령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2.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견학
3. 우수시민 기자 등의 산업시찰 및 연수 등

② 제1항의 교육은 자체 또는 위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수당 등의 지급) ① 시민기자 등이 소식지, 영상 및 인터넷 홍보매체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민기자 등이 의정 홍보 관련 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시민 등의 참여) ① 의장은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하여 소식지, 영상 및 인터넷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다.

② 소식지, 영상 및 인터넷 홍보매체 등을 통해 의정 홍보에 참여한 시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광명시의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29
----------	-----

발의년월일 : 2015년 4월 30일

발 의 자 : 고 순 희 의 원(대표발의)

1. 구 분 : 일부개정

2. 제안이유

- 위원회 회의를 반드시 공개로 해야 하는 것을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 위원회의 유회 선포 등을 본회의에 부합하도록 위원회에 관한 선포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일부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개최식 시행일 조정(안 제4조)
- 위원회의 동영상 보존 및 공개규정 수정(안 제48조의1 → 제59조의3)
- 준용규정 삭제(안 제48조의2)
- 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안 제49조, 안 제59조 제3항)
- 위원회의 유회 등 선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9조의2 제1항 ~ 제3항)
- 위원회 동영상공개의 비공개 단서조항 신설(안 제59조의2)

4. 개정규칙안 : 불 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임

7.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집회일”을 “매년 최초 집회일과 정례회”로 한다.

제48조의1을 제59조의3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의3(위원회의 동영상 공개 및 보존) 위원회 동영상 공개는 제48조에 준하고 보존은 의원 임기 종료까지로 한다.

제48조의2를 삭제한다.

제49조 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위원회에 관한 선포) ① 개회,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위원장이 선포한다.

② 위원장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개회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63조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개회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59조 제3항 중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한다.

제59조의2의 제목 “위원회회의록 동영상공개”를 “위원회의 동영상공개”로 한다.

제59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의 동의나 위원장의 제의로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공개로 진행하더라도 의결결과는 공개회의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48조의2(준용규정) (생략)	제4조(개회식) --- 매년 최초 집회일과 정례회----- ----- <삭제>
제49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제49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 ----- 부위원장과 ----- 제49조의2(위원회에 관한 선포) ① 개회, 정 회, 산회 및 유회는 위원장이 선포한다. ② 위원장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개회 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개회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59조(위원회 회의록) ① 및 ②(생략)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 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제59조의2(위원회회의록 동영상공개) 위원회 회의는 의회 홈페이지 “의회방송”범주에 동영상 또는 인터넷 방송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제59조(위원회 회의록) ① 및 ②(현행과 같음) ③ ----- ----- 부위원장이 ----- 제59조의2(위원회의 동영상공개) (현행과 같음)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의 동의나 위원장의 제의로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 으며 비공개로 진행하더라도 의결결과는 공 개회의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제48조의1(위원회 회의 동영상 보존 및 공개) 위원회 회의 동영상 보존 및 공개는 제 48조(회의록 배부 및 공개)에 준한다. 다만, 위원회 회의 동영상자료는 준영구 보존하고 3년간 공개 하여야 한다.	제59조의3(위원회의 동영상 보존 및 공개) 위 원회 동영상 공개는 제48조에 준하고 보존은 의원 임기 종료까지 한다.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0
----------	-----

발의연월일 : 2015년 4월 30일

발 의 자 : 김 기 춘 의원 (대표발의)

1. 구 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자원회수시설 방문객 및 등산객 등의 편의를 위한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라 주차공간의 순환 사용 등 방문객 편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차요금 징수 대상에 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 포함
- [별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추가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을 “청사 및 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청 부설주차장”을 “시청 및 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으로 한다.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에서 징수한 주차요금은 자원회수시설 방문객 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비용 등으로 활용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

구 분	시간요금	월 정기요금		비고
		주·야간	야간	
시 청	1회주차 (1구획당 최초 30분까지는 500원, 30분 이후 10분당 300원)	20,000원 이하	-	월 정기요금은 시청 및 시 민회관에 입주한 사회단체 임직원에 한함
광 명 시민체육관	1회주차 (1구획당 30분당 500원)	35,000원	15,000원	광명시민체육관 직원과 입 주사회단체 임직원에 한해 서는 시청공무원과 같이 함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1일 1회 주차 경 차 : 1,500원 소·중형차 : 3,000원 대형차 : 4,000원	-	-	자원회수시설 내 근무자 및 생활폐기물 반입 등 업무 관련차량은 면제

※ 비 고 : 자동차 세부기준

종 류	경 형	소 형	중 형	대 형
승 용 자동차	배기량이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 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이상 2,000cc미만 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기량이 2,000cc이상이거나, 길이 ·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 하는 것
승 합 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 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 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하 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 미터 미만인 것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 ·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 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징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청사 및 시설에 부설된 주차장----- ----- -----
제2조(주차요금 징수등) ① 시장은 지역교통 수요관리상 부설주차장을 청사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외주차장 요금의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청 부설주차장은 적용받지 아니한다. ②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제2조(주차요금 징수등) ① ----- ----- ----- ----- ----- ----- ----- 시청 및 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주차요금의 활용) 제2조에 의하여 징수한 주차요금은 교통관리 시책에 부합되는 비용으로 활용한다.	제3조(주차요금의 활용) ----- ----- ----- ----- ----- ----- ----- 단, 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에서 징수한 주차요금은 자원회수시설 방문객 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비용 등으로 활용한다.

현행					개정안				
〔별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					〔별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				
구분	시간요금	월 정기요금		비고	구분	시간요금	월 정기요금		비고
		주·야간	야간				주·야간	야간	
시청	1회주차 (1구획당 최초30분까지는 500원, 30분 이후 10분당 300원)	20,000원 이하	-	월 정기요금은 시청 및 시민회관에 입주 한 사회단체 임직원 에 한함	시청	1회주차 (1구획당 최초30분까지는 500원, 30분 이후 10분당 300원)	20,000원 이하	-	월 정기요금은 시청 및 시민회관에 입주한 사 회단체 임직원에 한함
광명 시민체육관	1회주차 (1구획당 30분당 500원)	35,000원	15,000원	광명시민체육관 직원 과 입주사회단체 임 직원에 한해서는 시 청공무원과 같이 함	광명 시민체육관	1회주차 (1구획당 30분당 500원)	35,000원	15,000원	광명시민체육관 직원과 입주사회단체 임직원에 한해서는 시청공무원과 같이 함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1일 1회 주차 경차: 1,500원 소·중형차: 3,000원 대형차: 4,000원	-	-	자원회수시설 내 근무자 및 생활폐기물 반입 등 업무 관련차량은 면제
※ 비고 : 자동차 세부기준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 자동차	배기량 1000cc미만으로 서 길이 3600mm 이하 ·너비 1600mm 이하 ·높이 2000mm 이하 인것	배기량 1000cc미만으로 서 길이 3600mm 이하 ·너비 1600mm 이하 ·높이 2000mm 이하 인것		배기량 1000cc이상 2000cc 미만이거나 길이 3600mm 이하·높이 2000mm 이하 인것	배기량 2000cc이상거나 길이 3600mm 초과 ·높이 2000mm 초과하는것				
승합 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서 길이 3600mm 이하 ·너비 1600mm 이하 ·높이 2000mm 이하 인것	승차량이 15인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3600mm 이하·너비 1600mm 이하 ·높이 2000mm 이하 인것		승차량이 15인 이상 50인 이하이거나 길이 3600mm 이하·높이 2000mm 이하 인것	승차량이 30인 이상거나 길이 3600mm 초과 ·높이 2000mm 초과하는것				

광명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31
----------	-----

발의년월일 : 2015년 4월 30일

발 의 자 : 오윤배 의원(대표발의)

1. 구 분 : 제 정

2. 제안이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폭력의 예방과 대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학교 분위기 조성 및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 학부모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 학교 폭력예방 교육 등, 관계기관등과의 협력(안 제6조 ~ 제7조)
- 협의회의 설치·기능, 구성 등, 운영, 수당 등(안 제8조 ~ 제12조)
- 사업비의 지원, 포상(안 제14조 ~ 제15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의회홈페이지 5일간 공고)

6.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7. 예산수반 사항

- 비용추계서 : 붙임

광명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제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장, 광명경찰서장, 청소년 관련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설치·기능) 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활동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명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과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간 지원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국·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교육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업무 담당 공무원

2. 광명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 담당 경찰 공무원
 3. 학생생활 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4. 광명시의회 의원
 5. 판사·검사·변호사
 6.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정신보건 전문가 및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8.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9.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10. 그 밖에 시장이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⑤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청소년보호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나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 기관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유지의 의무) 협의회 위원은 누구나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정보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 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서

관 계 법 령	내 용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제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3조(시장의 책무)
- 제11조(협의회의 운영) 및 제12조(수당 등)
- 제14조(사업비의 지원)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0조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나. 구성

- 당 연 직 : 부시장, 청소년보호업무 담당 국장
- 위 원 : 교육장 추천 학교폭력 담당 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원, 시의원, 전문가 등 20인 이내
- 주요기능 :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 방안 심의

다. 연간 소요예산

- 위원회 회의 및 운영비 : 6,400천원/년
 - 80,000원×20명×4회 = 6,400,000원

(단위 : 천원)

구분 \ 년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합 계	6,400	6,400	6,400	6,400	6,400	32,000
위원회 운영 등	6,400	6,400	6,400	6,400	6,400	32,000

3. 작성자 : 교육청소년과장 박진기